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4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431,730원(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지방교육세 3,904,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농어촌특별세 2,071,580원(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인 원고(2008. 10. 15. 설립)는 2011. 4. 22. 임의경매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44,687㎡ 중 41,381/44,687 지분을 취득하였고(갑 제1호증), 2011. 4. 27. 피고에게 위 임야 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농업법인'으로 하는 지방세 감경신청을 하였다(갑 제7호증의 2).

나. 피고는 2011. 4. 28. 원고에게 위 임야 지분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중 50% 상당액인 취득세 23,838,600원, 농어촌특별세 1,191,800원, 지방교육세 2,383,600원(이하 위 각 세금을 합하여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결정을 하였다(갑 제7호증의 9, 10). 이후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44,687㎡는 2012. 11. 14. B 임야 41,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외 1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2. 11.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관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위 임야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방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인 합계 46,766,690원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

라. 원고는 2017. 3. 16.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갑 제5호증),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17. 4. 20.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의 이 사건 지방세 감면액에 대한 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징금을 부과 · 고지(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목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취득세	23,836,000원	4,767,200원	12,828,530원	41,431,730원
지방교육세	2,383,600원	238,360원	1,282,850원	3,904,810원
농어촌특별세	1,191,800원	238,360원	641,420원	2,071,5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 7,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1. 4. 22.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임야를 삼림욕장으로 개발하고자 원고의 대표이사와 가족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위 임야 지상의 수목을 관리 · 육성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1. 4. 22.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감면신청 사유를 '농업법인'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앞의 1.의 가.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7호증의 5, 7, 8,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정관과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의 사업목적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 구매 · 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5, 7).

나)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10,000주이고, 원고의 주주는 원고 대표이사 C(보유주식 수: 4,000주), 사내이사 D(보유주식 수: 3,000주), E(보유주식 수: 3,000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C의 주소지는 [redacted]시 [redacted]구 F [redacted]동 1605호, D의 주소지는 [redacted]구 G빌라 201호, E의 주소지는 [redacted]구 H이다(갑 제7호증의 7, 8).

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위 임야는 그 지상에 용재로서의 가치가 희박한 자연생 입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로 있었다(을 제2, 4호증).

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4. 3. 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위 임야는 외형상 취득 당시의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이 사건 임야를 촬영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에 이 사건 임야의 외형에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다(을 제1, 2호증).

3)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직후부터 위 임야를 삼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욕장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위 임야 지상의 수목을 육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목적에는 임업(육림업),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 조성 등 임업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육림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redacted]시 [redacted]구 F에 주소를 둔 원고 대표이사 C와 그 가족들이 주말만을 이용하여 면적이 41,059㎡에 이르는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2011. 4. 22.)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22.까지 위 임야를 영농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끝.